
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홍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5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2. 10.

발의자 : 박홍근 · 박재호 · 전현희

이석현 · 변재일 · 김두관

권칠승 · 송기현 · 김상희

정재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.

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,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56조 및 제57조).
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제4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

제57조제6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별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6조(별 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6조(별 칙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제4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<u>누설하거나 도용한 자</u></p>
<p>제57조(별 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<u>6. 제4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</u></p>	<p>제57조(별 칙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